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 지침 주요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비고																																						
<p><비대면진료 대상 환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9e1f2;"> <th colspan="2">대상</th> <th>적용대상</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의원급 의료기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재진 원칙</td> <td>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진료한 경험(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이 있는 재진 환자 ※ 소아 환자(만 18세 미만)도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진료(재진)를 원칙으로 하나, 휴일·야간 시간대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처방 불가) * (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야간)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초진도 허용</td> <td>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섬·벽지 환자</td> <td>섬·벽지 지역(보험료 경감고시) 거주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거동불 편자</td> <td> ▶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감염병 확진 환자</td> <td>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권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td> </tr> </table> </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병원급 의료기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희귀질환자</td> <td>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1년 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수술·치료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td> <td>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30일 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결과의 설명에 한함 </td> </tr> </tbody> </table>	대상		적용대상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 원칙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진료한 경험 (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 이 있는 재진 환자 ※ 소아 환자(만 18세 미만)도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진료(재진)를 원칙으로 하나, 휴일·야간 시간대 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처방 불가) * (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야간)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초진도 허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섬·벽지 환자</td> <td>섬·벽지 지역(보험료 경감고시) 거주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거동불 편자</td> <td> ▶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감염병 확진 환자</td> <td>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권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td> </tr> </table>	섬·벽지 환자	섬·벽지 지역(보험료 경감고시) 거주자	거동불 편자	▶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 되어 격리(권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병원급 의료기관	희귀질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 (1년 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자	수술·치료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 (30일 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 가 필요한 환자 *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결과의 설명에 한함	<p><비대면진료 대상 환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9e1f2;"> <th>구분</th> <th>적용대상</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의원급 의료기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대면진료 경험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예외</td> <td style="text-align: center;">취약 지역</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벽지 거주자(「보험료 경감 고시」) ■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취약 시간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야간)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취약 계층</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 감염병 확진 환자(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권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병원급 의료기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대 면 진 료 경 험 자</td> <td>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희귀 질환자</td> <td>동일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1년 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수술·치 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td> <td> 동일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30일 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결과의 설명에 한함 </td> </tr> </table> </td> </tr> </tbody> </table>	구분	적용대상	의원급 의료기관	대면진료 경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예외	취약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벽지 거주자(「보험료 경감 고시」) ■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취약 시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야간)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취약 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 감염병 확진 환자(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권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병원급 의료기관	대 면 진 료 경 험 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희귀 질환자</td> <td>동일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1년 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수술·치 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td> <td> 동일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30일 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결과의 설명에 한함 </td> </tr> </table>	희귀 질환자	동일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 (1년 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자	수술·치 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동일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 (30일 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 가 필요한 환자 *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결과의 설명에 한함	<p>대상 환자 내용 변경</p>
대상		적용대상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 원칙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진료한 경험 (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 이 있는 재진 환자 ※ 소아 환자(만 18세 미만)도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진료(재진)를 원칙으로 하나, 휴일·야간 시간대 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처방 불가) * (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야간)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초진도 허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섬·벽지 환자</td> <td>섬·벽지 지역(보험료 경감고시) 거주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거동불 편자</td> <td> ▶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감염병 확진 환자</td> <td>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권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td> </tr> </table>	섬·벽지 환자	섬·벽지 지역(보험료 경감고시) 거주자	거동불 편자	▶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 되어 격리(권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섬·벽지 환자	섬·벽지 지역(보험료 경감고시) 거주자																																							
거동불 편자	▶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 되어 격리(권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병원급 의료기관	희귀질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 (1년 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자																																						
	수술·치료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 (30일 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 가 필요한 환자 *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결과의 설명에 한함																																						
구분	적용대상																																							
의원급 의료기관	대면진료 경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예외	취약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벽지 거주자(「보험료 경감 고시」) ■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취약 시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야간)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취약 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 감염병 확진 환자(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권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병원급 의료기관	대 면 진 료 경 험 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희귀 질환자</td> <td>동일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1년 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수술·치 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td> <td> 동일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30일 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결과의 설명에 한함 </td> </tr> </table>	희귀 질환자	동일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 (1년 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자	수술·치 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동일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 (30일 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 가 필요한 환자 *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결과의 설명에 한함																																		
	희귀 질환자	동일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 (1년 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자																																						
수술·치 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동일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 (30일 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 가 필요한 환자 *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결과의 설명에 한함																																							

현행	개정	비고
<p>○ (대면진료 경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하여 진료한 경험(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이 있는 재진 환자</p> <p>- 소아 환자(만 18세 미만)도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진료(재진)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p> <p>• (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야간)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p> <p>○ (섬·벽지 환자) 「보험료 경감 고시」 별표1에 규정된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초진 가능)</p> <p>○ (거동불편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만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초진가능)</p> <p>○ (감염병 확진 환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에 따른 제1급 또는 제2급 감염병 확진 환자 중 격리(권고 포함) 중인 환자(초진 가능)</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가 원칙</p> <p>→ ①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비대면진료 가능</p> <p>◇ 의료접근성이 낮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p> <p>→ ②,③,④에 해당할 경우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 가능</p> </div> <p>① (대면진료 경험자)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p> <p>② (취약지역 거주자) 섬·벽지 지역(「보험료 경감 고시」별표1), 응급의료 취약지(「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제2조) 거주하는 환자 ... [별첨2] 목록</p> <p>③ (취약시간대 환자)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야간(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에 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p> <p>④ (취약계층)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등록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32조), 감염병 확진 환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에 따른 제1급 또는 제2급 감염병 확진 환자 중 격리(권고 포함) 중인 환자)</p>	

현 행	개 정	비고
<p><처방금지 의약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23개 성분 	<p><처방금지 의약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23개 성분 ○ 사후피임약: 레보노르게스트렐(0.75mg, 1.5mg), 울리프리스탈(30mg) 함유제제 	사후피임약 추가
<p><처방전 전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는 환자와 협의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등 처방전 전송 방식 결정 	<p><처방전 전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는 환자와 협의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등 처방전 전송 방식 결정 ○ 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 직접 전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는 환자용 처방전에 한해 수령 가능 - 환자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플랫폼에서 처방전 다운로드 불가 	환자는 처방전 다운로드 불가

현 행	개 정	비고										
<p><약국 명세서 작성 요령></p> <p>○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비대면 투약조제를 한 경우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의 해당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에 '<u>비대면/재택수령</u>' 기재하여 청구한다.</p> <p>- 타 JX999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여 기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한다.</p>	<p><약국 명세서 작성 요령></p> <p>○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비대면 투약조제를 한 경우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의 해당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에 '<u>비대면조제 환자 유형과 재택수령 여부를 기재하여</u> 청구한다.</p> <p>- 타 JX999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여 기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한다.</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비대면조제 환자유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ackground-color: #ffffcc;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 5px 0;"> <p>※ 아래 4가지 유형을 제외한 비대면조제 환자의 경우 "비대면"으로 기재 단, 재택수령을 시행했을 경우는 "비대면/재택수령"으로 기재</p> </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 style="padding: 5px;">대상환자 유형</th> <th style="padding: 5px;">기재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섬·벽지 거주자</td> <td style="padding: 5px;">비대면/A</td> </tr> <tr> <td style="padding: 5px;">등록 장애인</td> <td style="padding: 5px;">비대면/B</td> </tr> <tr> <td style="padding: 5px;">감염병 확진 환자</td> <td style="padding: 5px;">비대면/C</td> </tr> <tr> <td style="padding: 5px;">65세 이상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td> <td style="padding: 5px;">비대면/D</td> </tr> </tbody> </table> <p>예) 섬벽지 거주자 비대면조제 ○ + 재택수령 ○ : "비대면/A/재택수령" 기재 섬벽지 거주자 비대면조제 ○ + 재택수령 X : "비대면/A" 기재 희귀질환자 비대면조제 ○ + 재택수령 X : "비대면" 기재 심야휴일 환자 비대면조제 ○ + 재택수령 X : "비대면" 기재</p> </div>	대상환자 유형	기재내용	섬·벽지 거주자	비대면/A	등록 장애인	비대면/B	감염병 확진 환자	비대면/C	65세 이상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비대면/D	<p>명세서 작성방법 변경</p>
대상환자 유형	기재내용											
섬·벽지 거주자	비대면/A											
등록 장애인	비대면/B											
감염병 확진 환자	비대면/C											
65세 이상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비대면/D											

현행	개정	비고																					
<p><환자 확인 방법 수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약국은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약사는 환자와 협의하여 조제가능 여부(대체조제 가능여부 포함), 의약품 수령방식(본인/대리/재택)을 사전에 확인한 후 조제를 실시해야 한다. 	<p><환자 확인 방법 수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약국은 환자의 본인 여부,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비대면진료"가 기재되어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약사는 환자와 협의하여 조제가능 여부(대체조제 가능여부 포함), 의약품 수령방식(본인/대리/재택)을 사전에 확인한 후 조제를 실시해야 한다. <p>*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섬·벽지 환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희귀질환자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자격확인서비스」</p> <p>※ 감염병 확진 환자는 환자의 격리통지서, 문자 등 확인</p>																						
<p><응급의료 취약지 추가></p>	<p><응급의료 취약지 추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제2조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1077 949 1951 1457"> <thead> <tr> <th>구분</th> <th>지역수</th> <th>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th> </tr> </thead> <tbody> <tr> <td>1. 인천</td> <td>2</td> <td>강화군, 옹진군</td> </tr> <tr> <td>2. 경기</td> <td>5</td> <td>가평군,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td> </tr> <tr> <td>3. 강원</td> <td>15</td> <td>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td> </tr> <tr> <td>4. 충북</td> <td>8</td> <td>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충주시</td> </tr> <tr> <td>5. 충남</td> <td>11</td> <td>공주시,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td> </tr> <tr> <td>6.</td> <td>9</td> <td>고창군,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td> </tr> </tbody> </table>	구분	지역수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1. 인천	2	강화군, 옹진군	2. 경기	5	가평군,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3. 강원	15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4. 충북	8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충주시	5. 충남	11	공주시,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6.	9	고창군,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	<p>응급의료 취약지 가주자 추가</p>
구분	지역수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1. 인천	2	강화군, 옹진군																					
2. 경기	5	가평군,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3. 강원	15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4. 충북	8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충주시																					
5. 충남	11	공주시,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6.	9	고창군,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																					

현 행	개 정			비고
	전북		군	
	7. 전남	17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8. 대구	1	군위군	
	9. 경북	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영덕군, 영주시, 영양군,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10.경남	14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11.제주	1	서귀포시	